

#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감사법무담당관

제정 1996·3·1 조례 제 17호  
일부개정 2015·9·25 조례 제1151호  
일부개정 2023·12·22 조례 제2021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공직자 윤리법」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·9·25, 2023·12·22>

**제2조(구성)** ①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<개정 2015·9·25, 2023·12·22>

1. 4명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)에서 추천한 사람
2. 3명의 위원은 이천시의회의원 1명과 이천시 소속공무원 2명
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. <개정 2015·9·25, 2023·12·22>

1.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4명중에서 선임
2.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3명중에서 선임

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이천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천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5·9·25>

**제3조(기능)**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, 결정한다. <개정 2015·9·25, 2023·12·22>

1. 「공직자 윤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
2.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
3.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

업무 취급의 승인

4.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
-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이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,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, 이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 <개정 2015·9·25>

**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9·25>

② 이천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5·9·25>

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5·9·25>

**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5·9·25>

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5·9·25>

**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5·9·25>

1.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
2.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
3.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
4.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 <개정 2015·9·25>

1.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

- 2.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
- 3.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
-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. <개정 2015·9·25>

**제7조(위원회의 간사 등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5·9·25>

② 간사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**제8조(수당 등)** 이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9·25>

**제9조(위원회의 운영규정)**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·9·25 조례 제115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·12·22 조례 제202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